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74호 2020. 10. 28.(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제2020-119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제2020-1374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 입법예고 4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28.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981-46 등 12건
- 폐지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석동길 82-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87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981-46	20090702	20201028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0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320-59	20090702	20201028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519-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204	20091228	20201028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71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빼제로 437	20091228	20201028	고제면에 위치한 빼제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신촌리 209-1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옹양로 2166-150	20091228	20201028	행정구역 옹양을 이용하여 옹양로로 명명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신촌리 209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옹양로 2166-152	20091228	20201028	행정구역 옹양을 이용하여 옹양로로 명명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3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깊은골길 24-20	20090401	20201028	양지에서 동쪽 2km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있다하여 붙여진 옛지명 반영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3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1길 19	20090401	20201028	마을 근처에 아귀이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38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동령길 82	20090401	20201028	마을 뒤의 관솔령 줄기가 남쪽으로 달리다가 이곳에서 동쪽으로 뺀 곳에 마을이 자리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14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1길 71-30	20091228	20201028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1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296-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도평길 131	20090401	20201028	도평마을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0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15-12	20090401	20201028	상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일곱번째 도로	부여
1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71-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석동길 82-2	20090401	20201028	석부산 밑에 있으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폐지

거창군 공고 제2020-1374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 입법예고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안

2. 폐지 및 제정이유

현행 조례로써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회계법령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

나.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제정함

- 1)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2)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3) 재정보증의 설정시기와 방법, 보증보험계약 체결, 보증기간을 정함
(안 제3조)

- 4) 재정보증 한도액을 정함(안 제4조)
- 5)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의 경우 재정보증 한도액을 정함(안 제5조)
- 6) 보험료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7)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8)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4. 예고기간 : 2020. 10. 28.(수) ~ 11. 17.(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폐지안 및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940-3241 / FAX : 055)940-3219 / 이메일 : rkbum@korea.kr

6. 그 밖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경리담당 ☎(055)940-32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안 각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기관·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안

○ 성명(기관·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7호, 2020. 6. 2., 일부개정]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